

#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

포항우체국 공고 제2017-06호

포항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에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(국고예의 귀속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.

## 다 음

1. 국고귀속일 : 2017. 8. 14.(월)

2. 국고귀속범위

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한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.

3. 국고귀속 대상 : 7건

| 총괄국명 | 소속국명           | 보관번호             | 가입일자        | 금액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포항   | 포항구룡포          | 700609-92-000189 | 2003.09.22. | 20,000  |
| 포항   | 포항구룡포          | 700609-92-000207 | 2007.06.29. | 20,000  |
| 포항   | 포항대도동          | 703504-92-000128 | 2007.03.12  | 200,000 |
| 포항   | 포항해도동(현.포항대도동) | 703876-92-000179 | 2004.03.04. | 200,000 |
| 포항   | 포항해도동(현.포항대도동) | 703876-92-000182 | 2004.03.04. | 200,000 |
| 포항   | 북포항            | 704379-92-000681 | 2008.01.17. | 20,000  |
| 포항   | 북포항            | 704379-92-000694 | 2008.01.17. | 20,000  |
| 포항   | 북포항            | 704379-92-000709 | 2008.01.17. | 20,000  |

4. 공고기간 : 2017. 7. 13. ~ 2017. 8. 12.

5. 공고장소 : 포항우체국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/kb/790>) 및 사고신고우체국 공중실

6. 환급기간 : 공고기간 내(2017. 7.13. ~ 2017. 8.12.)

7. 환급장소 : 사고신고우체국(포항구룡포, 포항대도동, 북포항)

8. 구비서류

가. 담보금 환급 청구서, 영수증(계약자 인감 날인) 1부.

나. 정부보관금수령증서(분실시 분실 확인서) 1부.

다. 사고신고인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.

라.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(법인-사업자등록증 사본, 개인-신분증 사본)

마. 위임장(사고신고인 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, 인감증명서 1부

※ 구비서류 양식 : 가,나,마 양식(별도첨부)

9.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우체국 금융담당(054-271-9940)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

2017년 7월 13일

포 항 우 체 국 장